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787호 2010. 7. 6(화)

포항시보

- 시장지시사항..... 2
- ◀ 조 려 ▶
-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007호) 5
-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08호) 9
-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09호) 15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10호) 22
-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62호) 28
- ◀ 공 고 ▶
- 第166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제 5 호) 32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관 리 번 호 | 지 시 내 용 | 주관부서 |
|-----------------------|--|---|
| <p>훈 시 (7. 5)</p> | <p>○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에 따른 대응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들의 장례 지원문제 및 보상문제를 공제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전 직원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불미스러운 행동 자제해 주시기 바람. <p>○ 도민체전을 비롯한 대형 행사 준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준비 및 손님맞이 준비에 전 부서가 관심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p>○ 피서객 맞이 준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월 여름은 포항의 계절인 만큼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이니 철저한 준비 바람. - 특히 바가지요금은 확실한 지도와 계도를 통해 없도록 하고, 쓰레기문제 등으로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진 바람, 바다시청 근무 철저히 하기 바람. <p>○ 포항물회, '영일만 친구' 쌀막걸리 지속적인 홍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행사 및 피서철을 이용하여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앞장서서 포항 특산물을 홍보하기 바람. <p>○ 포항스틸러스 사랑운동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틸러스가 포스코의 축구단이 아닌 시민구단이라 생각하고, 월드컵 분위기를 이어 많은 관중이 스틸야드를 찾도록 관심 갖고 홍보 및 응원 바람. | <p>전 부 서 교통행정과</p> <p>전 부 서 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p> <p>수산진흥과 전 부 서</p> <p>전 부 서 수산진흥과 농축산과</p> <p>전 부 서 체육지원과</p> |

| 관 리 번 호 | 지 시 내 용 | 주관부서 |
|-------------------|---|--|
| <p>훈 시 (7. 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우수기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각종 체납세 징수 철저. | <p>재난안전과 남·북구청 읍 면 동</p> <p>전 부 서 기획예산과</p> <p>재정관리과 남·북구청 읍 면 동</p>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7월 10일

포항시 조례 제 1007호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입안, 포항의 중·장기 비전과 도시경쟁력 향상 추진을 위한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역 장기발전의 기본방향, 목표설정 및 관련정책 등 영일만르네상스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발전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과제 발굴 및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과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 현안과제의 공동 대응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시의회,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 과장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의회의장,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관련기업·단체 임직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회의결과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사업의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비 및 각종 경비

- 2.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시설 시찰 및 학회 참석 시 실비
- 3. 지역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위탁비
- 4. 그 밖에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부대사업비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개정 '09.4.1)에 따라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입안, 포항의 중·장기 비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으로
- 현행 조례상 기구의 기능을 행정환경과 지역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 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포괄적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로서의 기능 부여(안 제1조, 제2조)
-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 까지)
- 다.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라. 재정지원 및 수당 등에 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7월 10일

포항시 조례 제 1008호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과 시청 부속 문화 복지동(이하 “복지동” 이라 한다)” 을 “포항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 시청 부속 문화동(이하 “문화동” 이라 한다), 포항시립중앙아트홀(이하 “아트홀”)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문화동” 이라 함은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과 그에 따른 장비시설을 말한다.
- 3. “아트홀” 이라 함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4. “회관, 문화동, 아트홀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을 “공연장, 전시장, 야외 공연장, 대잠홀”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회관 및 복지동” 을 “회관, 문화동, 아트홀” 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탁관리) 포항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기 본 시 설 사 용 료

(단위 :원)

| 구 분 | 시 설 별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
| 회관 | 대공연장 | 1일 (08:00-22:00) | 380,000 | ○초과사용료 가산 30분마다 초과 사용시 당해사용료 20% 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해 사용료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
| | | 오전(08:00-12:00) | 100,000 | |
| | | 오후(13:00-17:00) | 130,000 | |
| | | 야간(18:00-20:00) | 180,000 | |
| | 소공연장 | 1일 (08:00-22:00) | 150,000 | |
| | | 오전(08:00-12:00) | 40,000 | |
| | | 오후(13:00-17:00) | 50,000 | |
| | | 야간(18:00-22:00) | 80,000 | |
| | 전 시 실 | m ² 당/1일 | 120 | |
| | 야외공연장 | 1회 | 50,000 | |
| 문화동 | 대 잠 홀 | 1일 (08:00-22:00) | 230,000 | |
| | | 오전(08:00-12:00) | 60,000 | |
| | | 오후(13:00-17:00) | 80,000 | |
| | | 야간(18:00-22:00) | 110,000 | |
| 【신 설】 | | | | |
| 아트홀 | 공 연 장 | 1일 (08:00-22:00) | 150,000 | |
| | | 오전(08:00-12:00) | 40,000 | |
| | | 오후(13:00-17:00) | 50,000 | |
| | | 야간(18:00-22:00) | 80,000 | |
| | 전 시 실 | m ² 당/1일 | 120 | |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단위 : 원)

| 구 분 | 시 설 물 |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
|-------|---------|---------|------------------|---------|---|--------|
| 회관 | 피 아 노 | 외 산 | 1회 | 50,000 | ○1회란 공연 및 리 허설 횡수를 말함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이며 추가 사 용시 개당 5,000 원 추가됨 | |
| | | 국 산 | 1회 | 30,000 | | |
| | 무대조명 | 대 공 연 장 | 1회 | 50,000 | | |
| | | 소 공 연 장 | 1회 | 20,000 | | |
| | 무대음향 | 음 향 기 본 | | 1회 | | 20,000 |
| | | 음향 반사판 | | 1회 | | 30,000 |
| | | 무선 마이크 | | 개당 | | 10,000 |
| | | 녹 음 | 릴 테 이 프 | 개당 | | 30,000 |
| | | | CD테 이 프 | 개당 | | 20,000 |
| | | | DAT테이프 | 개당 | | 20,000 |
| | MD 테이프 | | 개당 | 20,000 | | |
| | 무대기계 | 오케스트라빋트 | | 1회 | | 20,000 |
| | | 빅스 테이지 | | 1회 | | 20,000 |
| | 냉난방시설 | 대 공 연 장 | 1회 | 100,000 | | |
| | | 소 공 연 장 | 1회 | 50,000 | | |
| | 영 사 기 | 대 공 연 장 | 1회 | 20,000 | | |
| 특수장비 | 드라이아이스기 | | 1회 | 10,000 | | |
| | 스 모 크 기 | | 1회 | 10,000 | | |
| 기타장비 | 덧 마 루 | | m ² 당 | 500 | | |
| | 합 창 대 | | 1식 | 30,000 | | |
| | 무 용 매 트 | | 1식 | 50,000 | | |
| 문화동 | 피 아 노 | 외 산 | 1회 | 50,000 |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 ○단,기기 사용에 한함 재료는 사용자 부담 | |
| | 무대조명 | 공 연 장 | 1회 | 30,000 | | |
| | 무대음향 | 음 향 기 본 | | 1회 | | 20,000 |
| | | 음향 반사판 | | 1회 | | 30,000 |
| | | 무선 마이크 | | 1회 | | 10,000 |
| | | 녹 음 | CD 테이프 | 개당 | | 20,000 |
| | MD 테이프 | | 개당 | 20,000 | | |
| | 냉난방시설 | 공 연 장 | 1회 | 60,000 | | |
| 기타장비 | 덧 마 루 | | m ² 당 | 500 | | |
| 【신 설】 | | | | | | |
| 아트홀 | 피아노 | 외 산 | 1회 | 30,000 | | |
| | 무대조명 | 공 연 장 | 1회 | 20,000 | | |
| | 무대음향 | 음 향 기 본 | | 1회 | 20,000 | |
| | | 무선 마이크 | | 1개 | 10,000 | |
| | 녹 음 | CD 테이프 | | 개당 | 20,000 | |
| | | 기타장비 | | 덧 마 루 | m ² 당 | 500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포항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과 시청 부속 문화복지동(이하 “복지동”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복지동”이라 함은 <u>시청 부속 문화복지동 공연장과 그에 따른 장비시설을 말한다.</u></p> <p>3. “회관과 복지동의 사용”이라 함은 <u>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u></p> <p>4. “회관과 사용”이라 함은 <u>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u></p> <p>5. ~ 7. (생략)</p> <p>제3조(대관의 범위) ① (생략)</p> <p>1. 기본시설 : <u>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u></p> <p>2. (생략)</p> | <p>제1조(목적) -----<u>포항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청 부속 문화동(이하 “문화동”이라 한다), 포항시립중앙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문화동”이라 함은 <u>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과 그에 따른 장비시설을 말한다.</u></p> <p>3. “아트홀”이라 함은 <u>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u></p> <p>4. “회관, 문화동, 아트홀의 사용”이라 함은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 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u></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대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1. ---<u>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대잠홀</u>-----</p> <p>2. (현행과 같음)</p> |

| | |
|---|--|
| <p>②포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회관 및 복지동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6조(시행규칙) (생략)</p> | <p>② ----- -----회관, 문화동, 아트홀 ----- ----- --</p> <p>제16조(위탁관리) 포항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
|---|--|

1. 개정이유

신설된 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연장 및 전시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에 따라 사용에 따른 대관료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항시립 중앙아트홀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위탁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연장 및 전시실 부과 기준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전시실 사용료로 준하여 적용 하고자함.

| | | |
|------------|-----------|-------------|
| 문화예술회관 | 소공연장 266석 | 1층 전시실 396㎡ |
| 포항 시립중앙아트홀 | 공연장 269석 | 전시실 280㎡ |

나. 문화복지동 공연장 명칭 변경
 다. 문화예술회관의 위탁관리 규정 마련(안 제16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7월 10일

포항시 조례 제1009호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및 제4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포항시 소재 초·중·고의 학교행사 및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제10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사용(수강료) 요금표

○ 청소년수련관

(단위 : 원)

| 구 분 | | 기 준 | 사 용 료 | | 비 고 |
|-----------|----------|-------------------|--------|--------|--|
| 청소년극장 | | 오전(08:00 ~ 12:00) | 50,000 | | ○ 기준시간 초과시에는 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매시간 20퍼센트씩 가산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09:00 ○ 조율비-사용자 부담 ○ 청소년문화의 집 • 기타시설은 청소년만 사용하며, 대기자가 있을 경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 |
| | | 오후(13:00 ~ 17:00) | 60,000 | | |
| | | 야간(18:00 ~ 22:00) | 90,000 | | |
| 어울마당 | | 1회(2시간) | 30,000 | | |
| 예절실 | | 1회(2시간) | 20,000 | | |
| 체력단련실 | | 청소년 | 무료 | | |
| | 일반인 | | 1회 | 2,000 | |
| | | | 월 | 40,000 | |
| 풋살구장 | | 청소년 | 무료 | | |
| | 일반인(1시간) | | 주간 | 20,000 | |
| | | | 야간 | 22,000 | |
| 독서실 | | 09:00 ~ 22:00 | 무료 | | |
| 빔프로젝트 | | 극장 이용시에 한함 | 20,000 | | |
| 냉·난방 | | 극장 이용시에 한함 | 50,000 | | |
| 피아노 | | 1회 공연시 | 10,000 | | |
| 청소년 문화의 집 | 기타시설 | 1회(2시간) | 무료 | | |
| | 북카페 | 09:00 ~ 18:00 | 무료 | | |

※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단위 : 원)

| 구분 | 기준 | 사 용 료 | | | | 비고 |
|-----------|------|--------|-------|-------|-------|-------------------------------------|
| | | 초등 | 중·고 | 대학 | 일반 | |
| 생활관 | 1인1일 | 2,000 | 2,500 | 3,000 | 5,000 | ○ 1일은 당일 12:00 부터 익일 12:00까지를 말함 |
| 야영장 | 1인1일 | 500 | 1,000 | 1,000 | 2,000 | |
| 강당 | 하절기 | 40,000 | | | | ○ 1회(2시간기준) 사용료 임 |
| | 동절기 | 30,000 | | | | |
| 산악 자전거 | 3시간 | 500 | 1,000 | 1,000 | 1,500 | |

※ 동절기 1인당 난방비 1,000원 가산

○ 교육수강료

(단위 : 원)

| 기준 | 수강료 | | 비고 |
|-----|-------|--------|----|
| | 초등 | 대학 | |
| 1개월 | 5,000 | 10,000 |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이용자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기타 시장이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p> | <p>제2조(이용자의 범위)<u>각호</u>의 어느 하나.....</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p> <p>.....</p> |
| <p>제3조(위탁운영) ① <u>시장은 수련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략)</p> | <p>제3조(위탁운영) ① <u>시장은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3. (생략)</p> <p>4. 제2조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p> <p>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p> | <p>제5조(사용제한)<u>각호의 어느 하나</u>.....</p> <p>.....</p> <p>1. (현행과 같음)</p> <p>2.<u>그 밖에</u></p> <p>.....</p> <p>3. (현행과 같음)</p> <p>4. <u>각호의 어느 하나</u>.....</p> <p>.....</p> <p>5. <u>그 밖에</u></p> <p>.....</p> |
| <p>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4조에</p> | <p>제9조(사용료의 감면)</p> |

의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 2. (생략)

<신설>

- 3. 기타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 2. (생략)

제12조(수강료)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생략)
- 2. 기타 시장이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 (현행과 같음)
- 3. 포항시 소재 초·중·고의 학교 행사 및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 4. 그 밖에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에

1. 개정이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시설 위탁운영자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요금표 중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자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로 규정(안 제3조 제1항)

나.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항시 소재 초·중·고의 학교행사 및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신설(안 제9조)

다. 청소년극장의 행사와 공연·영화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사용료를 통합하여 조정(안 별표)

- 오전 : 행사 30,000원, 공연·영화 40,000원 ⇒ 50,000원
- 오후 : 행사 30,000원, 공연·영화 40,000원 ⇒ 60,000원
- 야간 : 행사 40,000원, 공연·영화 50,000원 ⇒ 90,000원

라. “놀이마당”을 “어울마당”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안 별표)

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풋살구장의 사용료를 별표에 추가로 규정(안 별표)

바. 덕동청소년수련원의 폐원으로 관련 규정 삭제(안 별표)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7월 10일

포항시 조례 제1010호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제1항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계약금액 | 일시납 또는 분납 |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오피스텔은 호실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호실당 주차대수 1대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단, 산업단지 내 공장은 시설면적 500㎡당 1대 (시설면적/500㎡) |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9.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p> <p>1. (생략)</p> <p>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선정방법</th> <th style="width: 15%;">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width: 15%;">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항제1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이 정하는 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r> <tr> <td>제1항제2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익계약</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r> <td>기타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경쟁</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입찰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r> </tbody> </table> <p>③ < 신 설 ></p> | 구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의 경우 | 수익계약 |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 3개월 단위로 선납 | 기타의 경우 | 일반경쟁 | · 입찰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p>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선정방법</th> <th style="width: 15%;">납부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width: 15%;">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항제1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이 정하는 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r> <tr> <td>제1항제2호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경쟁</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시납 또는 분납</td> </tr> </tbody> </table> <p>③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할 수 있다.</p> | 구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계약금액 | 일시납 또는 분납 |
| 구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2호의 경우 | 수익계약 |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 3개월 단위로 선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의 경우 | 일반경쟁 | · 입찰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계약금액 | 일시납 또는 분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사법인 및 개인에게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관리수탁자 선정의 절차와 기준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일부 개정함 (안 제8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준용기준 마련함.(안 제8조제3항)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 조문을 삭제함(안 별표 7)
 -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3대

고 시

포항시 남구 송도, 북구 항구, 동빈동 일원의 포항 도시관리계획(항만세부시설)의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7월 6일

포항시 고시 제2010 - 62호

포항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중 항만시설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결정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가. 항만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m ²)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 1 | 항만 | | 항구동, 동빈동 송도동 일원 | 754,676 | | 754,676 | 1973.7.2 (건고 제275호) | 2009.10.27 (포항고시95호) |

나. 항만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 위 치 | 면 적(m ²)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항만시설 | 기본시설 | 방사제 | 송도동 253-56제 | 950 | - | 950 | 1973. 7. 2 건고 제275호 | L=190m |
| 기정 | " | " | 호안 | 송도동 공유수면 | 337 | - | 337 | 1973. 7. 2 건고 제275호 | L=337m |
| 기정 | " | " | 방파제 | 항구동 341 외 해면 | 8,578 | - | 8,578 | 1994. 10. 20 포항고 제375호 | |
| 변경 | " | " | 물양장 | 동빈동 148-3 | 15,420 | 감 2,367 | 13,053 | 1973. 7. 2 건고 제275호 | L=1,380m |
| 기정 | " | " | 안벽 | 항구, 동빈, 송도동 공유수면 | 33,421 | - | 33,421 | 1993. 3. 16 경북고 제92호 | L=1,161m B=15H |
| 기정 | " | 지원시설 | 업무용시설 | 항구동 58-6 | 4,215 | - | 4,215 | | |
| 기정 | " | 기능시설 | 여객터미널 | 항구동 17-13 | 34,763 | - | 34,763 | 1994. 10. 20 포항고 제375호 | |
| 기정 | 항만시설 | 기능시설 | 저유소 | 송도동 253-55 | 17,005 | - | 17,005 | 1994. 10. 20 포항고 제375호 | |
| 기정 | " | " | 저장고 | 송도동 253-55 | 8,361 | - | 8,361 | | |
| 기정 | " | " | 창고 | 송도동 산1-73 | 4,217 | - | 4,217 | | |
| 신설 | " | " | 도로 | 항구동 331-1 | - | 증 2,612 | 2,612 | - | |
| 신설 | " | 항만 친수시설 | 해양공원 | 항구동 58-34 | - | 증 2,367 | 2,367 | - | 산책로 조정시설 |
| 기정 | " | 기능시설 | 수산물위판장 | 송도동 공유수면 | 6,000 | - | 6,00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어선부두 및 배후부지 |
| 기정 | " | " | 급유시설 | " | 2,400 | - | 2,40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 |
| 기정 | " | " | 냉동·냉장시설 | " | 2,800 | - | 2,80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 |
| 기정 | " | " | 수산물가공공장 | " | 650 | - | 65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 |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 | " | 폐수처리시설 | " | 650 | - | 65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 |
| 변경 | " | " | 주차장 및 도로 | " | 5,380 | 감 450 | 4,93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 |
| 기정 | " | " | 지역특산품등 판매장 | " | 2,500 | - | 2,50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 |
| 신설 | " | 지원시설 | 업무용시설 | " | - | 증 450 | 450 | - | 항운노조 사무실 |
| 기정 | " | " | 보관창고 | 항구동 58-62 | 1,480 | - | 1,48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화물부두 (천일화물) |
| 기정 | " | " | 보관창고 | 항구동 58-61 | 1,811 | - | 1,811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화물부두 (대한통운) |
| 기정 | " | " | 항만중사자 휴게소 | 항구동 58-64 | 510 | - | 51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화물부두 |
| 기정 | " | " | 업무용시설 | 항구동 58-63 | 4,145 | - | 4,145 | 2008. 11. 10 포항고 제126호 | 해양환경 관리공단 |
| 기정 | " | 기본시설 | 도로 | 항구동 58-65 | 1,829 | - | 1,829 | 2008. 11. 10 포항고 제126호 | 화물부두 |
| 변경 | " | 지원시설 | 업무용시설→ 편의제공시설 | 동빈동 981-7 일원 | 1,922 | - | 1,922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어민대기실 및 휴게소 |
| 기정 | " | " | 업무용시설 | 동빈동 981-1 일원 | 670 | - | 670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해경파출소 |
| 기정 | " | 항만 친수시설 | 해양공원 | 동빈동 981-1 일원 | 3,863 | - | 3,863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산책로, 조정시설 |
| 기정 | " | " | 해양공원 | 동빈동 148 일원 | 3,858 | - | 3,858 | 2008. 8. 7 포항고 제91호 | 산책로, 조정, 매점 등 |

다. 항만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항만시설 | 기본시설 | 물양장 | A = 15,420㎡ → 13,053㎡ (감 2,367㎡) |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만친수시설(해양공원)으로 변경 |
| | 항만친수시설 | 해양공원 | 신설 A = 2,367㎡ | |
| | 기능시설 | 도로 | 신설 A = 2,612㎡ |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을 기능시설(도로)로 결정 |
| | 기능시설 | 주차장 및 도로 | A = 5,380㎡ → 4,930㎡ (감 450㎡) | 기존 동빈부두내에 있던 항만 시설 일부가 송도동 항만재개발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항운노조사무실의 위치 변경 |
| | 지원시설 | 업무용시설 | 신설 A = 450㎡ | |
| | 지원시설 | 편의제공시설 | · 시설의 세분 변경 - 업무용시설 → 편의제공시설 A = 1,922㎡(변경없음) | 항운노조사무실의 이전 및 항만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어민대기실 2층에 편의제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세분 변경 |

- 3. 도시관리계획(항만세부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
(도면 실음 생략)

- 4.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남·북구청 건축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의회공고 제 5 호

第166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

地方自治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第166回 浦項市議會(臨時會)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

日時 : 2010年 7月 7日(水曜日) 午前 10時 30分

場所 : 浦項市議會 本會議場

2010년 7월 1일

포항시의회사무국장 신 계 만